

제2026-45호 2026년 5월 28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51호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승인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6-156호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653호 보상협의 공사송달 공고 「월내이주단지 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 여수시 공고 제2026-1680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미부과 조정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돌산 금봉지구)
반송에 따른 공사송달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68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692호 공유수면 내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입 법 예 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667호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6-1673호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에서 추진중인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어촌 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여 수 시 장

1. 계획의 명칭: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2. 근거법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계획의 목적: 농촌 공간의 체계적인 재구조화와 재생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농촌다움 회복 및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4.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여수시 일원
 -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5년(10년 단위 기본계획)
5. 주요내용
 - 농촌공간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 및 추진 전략
 -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기능 설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6.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6. 5. 28.(목) ~ 2026. 6. 11.(목) (14일간)

- 장 소: 여수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61-659-4429)

7. 기타 문의사항

-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 061-659-442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062-958-2412)로 문의 바랍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5. 28.

여 수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m ²)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21	20	보조간 선도로	1,080	대2-3 (우두리 산 169임)	대3-15 (우두리 1405-58도)	일반 도로	세구지	전고-98호 87.06.13	
변경	중로	1	21	20~24	보조간 선도로	1,053	대2-3 (평사리 1405-58도)	대3-15 (우두리 1136-2도)	일반 도로	세구지	전고-98호 87.06.13	
기정	중로	1	24	20	보조간 선도로	190	(평사리 15 80)	중1-21 (평사리 1581도)	일반 도로	-	전고-98호 87.06.13	
변경	중로	1	24	20	보조간 선도로	190	(평사리 15 80)	중1-21 (평사리 1581도)	일반 도로	-	전고-98호 87.06.13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21	중로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형 및 폭원 변경 - 위치 : 돌산읍 우두리 1182번지 일원 - 폭원 : 20m → 20~24m - 연장 : 1,080m → 1,05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도로와 도시계획선 불일치 구간 현황반영 및 여수세계섬박람회 수행사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변경
중로 1-24	중로 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각부 선형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선 종점부 가각 오류에 따른 선형 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1	굴밭공원	근린공원	돌산읍 우두리 657-12 일원 → 돌산읍 우두리 1136-3 일원	6,843.4	감) 181	6,662.4	건고-187호 93.05.31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굴밭공원	○ 공원면적 변경 - 6,843.4m ² → 6,662.4m ² (감 181m ²)	○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진입도로 정비 사업에 따른 변경 및 면적오류 정정

3)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7	녹지	완충녹지	돌산읍 우두리 998 일원	9,908.7	감) 518	9,390.7		

4)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9,908.7m ² → 9,390.7m ² (감 518m ²)	○ 현황 및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변경

2.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녹지) 결정 변경 도면: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월내이주단지~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사망,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5. 28.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월내이주단지~죽림택지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공구)
2. 사 업 구 간 : 여수시 안산동, 소라면 죽림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 고 기 간 : 2026. 5. 28. ~ 2026. 6. 12.(15일간)
5. 공 고 장 소 :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공 고 내 용
 - 협의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협의장소 : 여수시청 도로과 (☎061-659-4065)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위 협의기간 중 미 협의 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에 따른 손실보상 예정
 -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 가능
 - 보상협의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일반 1부, 매도용 1부),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경사항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인감도장

7. 공시송달 대상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여수시 안산동	372-1	전	259* 28/136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번길 ***, *층 ***호	김*수			공유지분
2	여수시 안산동	372-2	전	19* 28/136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번길 ***, *층 ***호	김*수			공유지분
3	여수시 안산동	613-1	전	143	미등기 사정토지		여천군 화양면 나진리 ***	이*규	토지대장상 소유주
4	여수시 안산동	산21-1	임야	1,052	미등기 사정토지		여수시 안산리 ***	김*철	임야대장상 소유주

8. 기타 사항 및 문의처

- 보상협의 요청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수용재결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도로과(☎061-659-4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돌산 금봉지구의 면적 증가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에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상속인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에 따라 체납 조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돌산 금봉지구 6명
2. 공고기간: 2026. 5. 27. ~ 2026. 6. 10.(15일간)
3. 공고장소: 시보·홈페이지·돌산읍사무소 게시판
4. 공고내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미부과 조정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고지(돌산 금봉지구)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659-3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2026. 5. 27.

여 수 시
장

공시송달 조서

순번	성명	발송구분	취급구분	주소	발송일자	배달결과
1	김**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원로 15, ***동 ****호(신정동)	2026-05-11	배달완료(우편함)
2	황**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원로 15, ***동 ****호(신정동)	2026-05-11	배달완료(우편함)
3	황**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원로 15, ***동 ****호(신정동)	2026-05-11	배달완료(우편함)
4	황**수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강기도 수현시 영흥구 매봉로27번길 20-12, ***호(매탄동)	2026-05-11	배문부재(반송)
5	한**숙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전라남도 여수시 무신2길 39, ***동 ****호(화정동)	2026-05-11	배문부재(반송)
6	황**우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이무과 조청금 상속 토지에 대한 조청금 납부 고지(동산 권봉지구)	등기	광주광역시 북구 신촌로7번길 37, ***호(오지동)	2026-05-11	수취인불명(반송)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5. 28.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주시청 (섬발전지원과)	여주시 화정면 조발리 산 111번지 일원	둔병도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62㎡	허가일로부터 30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6. 5. 28. ~ 2026. 6. 12.(15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5. 28. ~ 2026. 6. 12.(15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beagywns@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8급 배효준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정책과)

유의사항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7.

여 수 시 장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와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서 허용하는 기금의 투자조합 출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성장펀드' 최종 선정 결과, '광주·전남 지역성장펀드' 조성 참여와 중소기업발전기금 투자계정 신설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목적)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투자관련 근거 명시

○ 조례안 제2조(정의)

- 벤처기업,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용어 신설

○ 조례안 제3조의2(기금의 설치)

- 기금 계정을 ‘융자계정’ 과 ‘투자계정’ 으로 목적별 분리 운영 신설

○ 조례안 제4조(기금의 재원)

- 투자계정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투자출자금의 회수금, 운용 수익금
으로 조성

○ 조례안 제6조(기금의 용도)

- 투자계정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여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 근거 마련

3.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 ~ 6. 16.(20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
시장(경제일자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할 곳

- 주 소 : 우)59723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

- 전 화 : 061)659-3614, 팩스 : 061)659-5816
- 전자우편 : mee1267@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제2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6.“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7.“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 8.“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금”을 각각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③시장은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에 따른 출연금·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용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기타, 용자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금”을 “용자계정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신설></p>	<p>5.“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p>
<p><신설></p>	<p>6.“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p>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생 략)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7.“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용자계정
2. 투자계정

제4조(기금의 재원) ①용자계정-----.

1. (현행과 같음)
2. 용자계정-----
3. (현행과 같음)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③ (생략)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2. (생략)

<신설>

3.·4. (생략)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

-----.

1.·2. (현행과 같음)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공 고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7.

여 수 시 장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근거 강화
-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24.10.29.)에 따른 의무 사항 반영
-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불부합한 사항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특이민원 정의 추가**
 -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 **안 제6조(지원 사항) : 구체적인 문구 조정**

- 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을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으로 개정

○ **안 제7조(안전시설 확충) : 제목변경 및 구체적인 세부사항 추가**

「제7조(안전시설 확충)」을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개정

-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 4.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 **안 제7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 신설**

- 1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 2항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또는 유관 기관과 협조 할 수 있다.」

○ **안 제7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 신설**

- 1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항 「제1항에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한다.」

○ **안 제7조의4(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 신설**

- 1항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2항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3항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 4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
 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3. 입법예고기간 : 2026. 5. 27. ~ 6. 16.(20일간)

4. 개정조례안 : 붙임 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할 곳

- 주 소 : 우)59723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민원지적과)
- 전 화 : 061)659-3313, 팩스 : 061)659-5810
- 전자우편 : soonmi4u@korea.kr

7.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민원지적과(☎061-659-3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 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1 일부개정 조례안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원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형사고발”을 “고소·고발”로, “소송 등의 법률”을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안전시설 확충)”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한다.

제7조의4(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
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제12조 중 “**사항으로**”를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u>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u>” 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1. <u>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u></p> <p>2. <u>공무직 근로자</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u>” 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u>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u></p> <p>나. <u>공무직 근로자</u></p> <p>다. <u>기간제 근로자</u></p> <p>라. 「<u>청원경찰법</u>」에 따른 <u>청원경찰</u></p> <p>마. <u>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u></p> <p>2. “<u>특이민원</u>” 이란 <u>폭언·폭행</u></p>

3.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
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
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
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
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
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
5. · 6. (생략)

제7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
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 행위
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적용범위) ----- 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

-----.

제6조(지원 사항) -----

-----.

1. ~ 3. (현행과 같음)
4. ----- 고소·고발 -----
--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

5. · 6.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 경
우 다음 각 호의 -----

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
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

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4.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제7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① 시장은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 폭행, 위협, 고성
등 위해를 가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민원인의 청사 출입을 일시적
으로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 등 유관 기관
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면담을
포함한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신 설>

사유 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폭언, 모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한다. 이 경우 종료 전 민원인에게 해당 사유를 고지한다.

제7조의4(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담당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
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
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
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민원인의 폭언·폭행 여부

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

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
다.

제12조(시행규칙) -----
---- 사항은 -----.